

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2.

발 의 자 : 박홍배 · 손명수 · 허성무
조인철 · 안태준 · 전용기
김문수 · 정태호 · 김태선
김성희 · 박상혁 · 朴芝源
안규백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회계 관련 공무원, 대학교수, 은행·상장법인 등의 직원, 경리병과 장교로서 일정 기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시험의 면제는 공무원 등의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키며,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, 현행법은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사원과 그 배우자가 감사대상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경우 해당 회사를 감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사원이 해당 회사의 감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감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

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등의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, 회계법인의 사원이 직접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임원이거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회사에 대하여 회계법인의 감사를 허용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, 회계법인의 불합리한 감사 제한 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(안 제6조, 제7조 및 제33조).

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33조제1항제2호 중 “者”를 “者.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회계법인의 사원이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한다.

- 가. 임원(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)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
- 나.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인회계사 시험의 일부면제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

1차시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·제3항
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第6條(試驗의 一部免除)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 하여는 시험중 第1次試驗을 免 除한다. 1.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서 3年以上 企業會 計・會計監査 또는 直接稅 稅務會計에 관한 事務를 담 당한 經歷이 있는 者 2. 대학·전문대학(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)의 조교수 이상의 職에서 3年以上 會計 學을 教授한 經歷이 있는 者 3. 「은행법」 第2條의 規定에 의한 은행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級이상의 職에서 5 년이상 會計에 관한 事務를 담당한 經歷이 있는 者 4. 大尉이상의 經理兵科將校로 서 5年以上 軍의 經理 또는 會計監査에 관한 事務를 담	第6條(試驗의 一部免除) <삭 제>

한다.

② ~ ④ (생략)

第33條(職務制限) ① 會計法人은 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한 財務諸表를 監査하거나 證明하는 職務를 行하지 못한다.

1. (생략)

2. 會計法人의 社員이 제21조제 1항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者 <단서 신설>

<신설>

<신설>

3. (생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第33條(職務制限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者. 단

만, 회계법인의 사원이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한다.

가. 임원(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)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

나.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자

3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